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1. 19 선고 2020가단837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1. 12. 15.

판 결 선 고 2022. 1. 19.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동산 양도담보 목적물의 표시 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 2018. 7. 10. 체결된 권리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유체동산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E는 2014. 11. 7.경 D로부터 순천시 F건물 G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10.부터 2015. 11.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10.경 D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건물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이후 D 소유의 위 건물에 관하여 2016. 11. 14. 이 법원 H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E는 2017. 2. 6.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이 E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은 결과, E는 임대차보증금 중 5,545,170원만 배당받고 나머지 44,454,830원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8. 12. 5.경 E로부터 E의 D에 대한 44,454,83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다음 D를 상대로 양수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7. 17. 이 법원으로부터 “D는 원고에게 44,454,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2018가단9900).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D의 이 사건 양도계약

D는 2018. 7. 10. I의 피고에 대한 채무 1억 3,600만 원을 대위변제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별지 동산 양도담보 목적물의 표시 목록 기재 물건(이하 ‘양도목적물’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양도목적물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였다.

이후 피고는 양도목적물 중 일부 물건을 처분하여, 현재 별지 유체동산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다. D의 재산상태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D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2019. 4.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가 취득한 양도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아,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그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을 3호증(갑 6호증), 을 4, 5, 7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2019. 4. 23. 원고에게, ‘원고는 2019. 5. 3.까지 피고에게 피고가 취득한 양도목적물 중 순천시 F건물 J호, G호, K호에 있는 물건을 인도하고, 이를 게을리할 경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2019. 4. 25. 위 우편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D가 2019. 6. 25. 원고에게 ‘D가 피고에게 양도목적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피고에게 모든 권한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도목적물을 직, 간접으로 점유하신 원고는 피고와 원만히 합의하여 동산인도 등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 원고는 2019. 7. 22. 피고에게 피고의 2019. 4. 23.자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9. 4. 25.(늦어도 2019. 7. 22.)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이며 D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1호증과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10. 16.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양도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소(2019가단80975)를 제기한 사실, 위 소장은 2019. 11. 1.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송달된 서류에 이 사건 양도계약서 사본(갑 1호증)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소장을 송달받은 2019. 11. 1.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지 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제척기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전 발생한 E의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가 양수한 다음, D를 상대로 양수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위 채권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되기 전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이 2018. 2. 20.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E의 D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은 그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과 수익자의 악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가 피고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처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피고는, 피고가 I를 상대로 I의 사기로 입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I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D가 I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양도목적물을 양도한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을 1호증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익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D에게 양도담보 목적물 중 피고가 매각한 물건을 제외한 이 사건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유재현

동산 양도 담보 목적물의 표시

◆담보 목적물 소재지: 전라남도 순천시

(총 56세대) 4세대 1세대

번 호	품 명	제 조 화 사 및 규 격	주 탕	비 고
1	tv	32인치	56	
2	에어컨		56	
3	세탁기		56	
4	냉장고		56	
5	침대	편사이즈	56	
6	장롱		112	
7	서랍장		56	
8	책상		56	
9	전자레인지		56	
10	쇼파		12	
11	쇼파테이블		12	
12	거실장		12	

위 수량은 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위 담보목적물의 ~~대항~~성명: 주소 : 순천시 , 호

유체동산 목록

□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F건물

□ 원룸 : 16세대

○ 오피스텔 내역: L, M, N, G, O, P, Q, R, S, T, U, V, W, X, Y, Z호

○ 유체동산 내역

번호	품 명	제조회사 및 규격	수 량	비 고
1	tv	32인치	1	
2	에어컨	AA벽걸이	1	
3	세탁기	AA, AB	1	
4	냉장고	AA, AC	1	
5	침대	퀸사이즈	1	
6	장롱		2	
7	서랍장		1	
8	책상		1	
9	전자레인지		1	

□ 투룸 : 6세대

○ 오피스텔 내역: AD, AE, AF, AG, AH, AI호

○ 유체동산 내역

번호	품 명	제조회사 및 규격	수 량	비 고
1	tv	32인치	1	
2	에어컨	AA벽걸이	1	
3	세탁기	AA, AB	1	
4	냉장고	AA, AC	1	
5	침대	퀸사이즈	1	
6	장롱		2	
7	서랍장		1	
8	책상		1	
9	전자레인지		1	
10	쇼파		1	
11	쇼파테이블		1	
12	거실장		1	

